

2024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1개 부문

3 평석 대상

- [권고 주제] 다음 판례 중에서 선택 (상세내역 별첨 5 참조)

연번	판례번호	쟁점
1	대법원 2020두49539(2022.12.01.) 수원고법 2020누10339(2020.08.26.) 수원지법 19구합 62957(19.12.26)	실제지급가격(운임)
2	대법원 2013두14764 (2015.2.26.) 서울고법 2011누19316 (2013.6.28.) 서울행정 2011구합3296 (2011.5.20.)	실제지급가격(구매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가 권리사용료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서울고법 2012누1961 (2012.11.30.) 인천지법 2011구합741 (2011.12.7.)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영업이익조정을 위한 TP사후보상 조정을 실제 지급가격의 조정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4	대법원 2017두35547 (2017.5.31.) 부산고법 2016누23080 (2017.1.13.) 부산지법 2015구합23824 (2016.9.8.)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여 결정된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대법원 2015두52098 (2016.8.30.) 서울고법 2014누65495 (2015.8.27.) 서울행정 2013구합57372 (2014.9.2.)	국제마케팅비(권리사용료로 가산 여부)
6	대법원 2019두50373(2019.12.12.) 서울고법 2019누34694(2019.7.19.) 서울행정 2017구합80264(2019.1.10.)	사후귀속이익(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7	대법원 2022두 35275 (2022.6.16) 서울고법 2021누34369 (2022.1.14.) 인천지법 2019구합52144 (2021.1.15.)	사후귀속이익 또는 실제지급가격(이전가격 사후 보상 조정)

2024년 관세평가판례평석공모전공고

연번	판례번호	쟁점
8	대법원 2019두 43795 (2019.9.10.) 부산고법 2018누68621 (2019.5.24.) 부산지법 2017구합78759 (2018.09.20.)	특수관계영향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 (제3방법 적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9	인천지법 2021구합51823 (2022.6.10.)	제3방법(유사물품의 가격)
10	대법원 2019두55781 (2023.8.31.) 서울고법 2018누78307 (2019.9.25.) 서울행정 2017구합78537 (2018.11.29.)	보세공장 내외국 물품혼용승인 이전 투입된 물품의 외국물품 간주
11	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2.2.11.) 서울행정 2019구합83762 (2021.1.26.)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수탁가공용 부분품)
12	대법원 2022두38007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19누37198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77480 (2019.1.1.)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13	대법원 2022두54405(2022.12.15.) 광주고법 2020누12437(2022.07.21.) 광주지법 2019구합13343(2020.09.24.)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실제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
14	대법원 2020두36104 (2020.6.25. 기각) 서울고법 2019누45403 (2020.1.29.) 서울행정 2018구합77913 (2019.5.10.)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조 무상수입)
15	대법원 2020두34605 (2020.5.28. 기각) 광주고법 2018누6149 (2020.1.9.) 광주지법 2017구합12209 (2018.10.11.)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조원가에 기초한 합리적 방법)
16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 제품과세)

※ 참가 신청하신 후 평석 대상 판결을 정하신 분들께 해당 판결문 전문을 주최 측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결정 또는 판결문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일부 비공개 판례의 경우 참가자 요청 시 주최 측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평석 형식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7 참조)하되, **자유 형식 가능**
 -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 평석 후단에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4.4.8.(월) - 5.20.(월)**
 -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관세행정관
 - ☎ 042-714-7549 / wlals0430@korea.kr

6 평석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월)**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검증 및 심사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8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시상 내역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발표 : 2024.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ganseoyoungomotion.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평석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판례평석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00 변호사
■ 연락처	010-1234-5673	■ 이메일	000000@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00동 0000동		
■ 평석대상	대법원 선고 2020두51242 판결(2021.2.4.) 외 (참가신청 후 제출 가능)		
■ 평석주제	평석개요 작성 (예 : 수출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 전에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팀원

■ 성명①	김연구	■ 소속 및 직위	관세컨설팅(주) 관세사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②	박관세	■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판례 평석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4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평석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4.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 주소	공모전 운영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 기간
우수작채자 인쇄업체	성명, 소속	책자 발간	3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관세평가 판례평석 권고 판례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	대법원 2020두49539(2022.12.01.) 수원고법 2020누10339 (2020.08.26.) 수원지법 2019구합 62957(19.12.26) <한★◎◇△◆>	실제지급가격 (운임 실질과세)	<p>“원고와 A는 운임의 모든 구성요소를 매 항 차별 선적수량에 비례하여 안분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과 같이 매 항 차별 운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A가 자본비를 상환는 시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 변경합의와 같이 매 항 차별 운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어느 경우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그 약정에 따른 운임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조정요소로서의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원심)</p> <p>“한편 과세관청이 운송계약에서 정하거나 운임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운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운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p> <p>...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는 과세단위별 운임 그 자체를 변경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운임 중 일부의 이행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운임명세서가 아닌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따라 당해 계약연도의 자본비를 안분하여 운임을 재산정한 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운임명세서에 따라 운임을 신고하여서 이 사건 쟁점신고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므로 가산세를 징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신고의 경우가 운임명세서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1심)</p>	[참조 1-1 한★◎◇△◆] 대법원 2016두47321 (2016.12.15.)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2	대법원 2013두14764 (2015.2.26.) 서울고법 2011누19316 (2013.6.28.) 서울행정 2011구합3296 (2011.5.20.) <소△※☆■♣홍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	실제지급가격 (광고선전비)	<p>“...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u>간접적인 지급</u>’이 <u>란 함은</u>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를 우회 하여 판매자가 행하여야 하는 활동이나 제3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등에 관하여 구 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 또는 판매조 건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출연을 하는 경 우 등으로서, 이로써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 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입물품의 시장판 매에 관련되는 활동과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자가 출연하는 경우는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출연은 <u>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u>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p> <p>“...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입물품의 판매 촉 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시장 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가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 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 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이 사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 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광고선 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 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p>	[동일취지판결] 대법2013두14 757(15.2.26.), 대법2013두20 721(15.2.26.), 대법2012두87 4(15.3.12.)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 data-bbox="236 277 472 309"><한국배●●◇◇◇◇></p>		<p data-bbox="821 277 1254 745">다)이 사실상 국내 판매가격으로 결정되고 ... 이 사건 계약 제 7.1조, 제8.2조는 공급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약제품의 순매출액 에 대해서 ... 대고객 판매가격으로 산정되 는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을 의 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순매출액은 계 약제품의 대고객 판매가격에 판매량을 곱 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판 매가격은 보험약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 아야 한다”</p> <p data-bbox="821 770 1254 1373">“피고는 ... 원고가 보험약가 인하 예상액 을 사전 반영 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 할인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부인하고 위 자료에 따라 산정된 비정상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 분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장하 는 취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제품의 실제 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가 택한 방법 은 당사자 사이의 비정상 할인액을 산정하 고 거래약정, 즉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실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 이다”</p> <p data-bbox="821 1397 1254 1827">“원고는 사후 조정 필요액이 원고가 2010. 소외 독일법인에 'DICO Adjustment'로 이 미 지급한 20.02억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위 20.02억원은 이 사건 각 제품별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독일 법인 사이에 원고 에게 발생한 이익을 분배 내지 조정한 것으 로서 그 성격이 달라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 자체에 관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p> <p data-bbox="821 1852 1254 2018">“ ...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제품의 공급가격을 바탕으로 한 대금이 지 급되지 아니하고 ...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독일 법인 모두 계약 위반을 주장하지 않은</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것은 원고가 소외 독일 법인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DICO Adjustment' 등의 명목으로 이익이 일부분 배되었기 때문”</p>	
5	<p>대법원 2015두52098 (2016.8.30.) 서울고법 2014누65495 (2015.8.27.) 서울행정 2013구합57372 (2014.9.2.)</p> <p><아<◁●▣코리아>></p>	권리사용료	<p>“...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p> <p>“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 아◇◇◇가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이다.”</p> <p>...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에 의한 활동으로써 독일 아◇◇◇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표권자인 독일 아◇◇◇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된다. 설령 그러한 활동으로써 상표권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p> <p>“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p>	<p>[동일취지판결] 대법2015두58591(16.9.30.), 대법2017두13362(17.10.12.)</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 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p>	
6	<p>대법원 2019두50373(2019.12.12.) 서울고법 2019누34694(2019.7.19.) 서울행정 2017구합80264(2019.1.10.)</p> <p><◉◆자동차코리아(주)></p>	<p>사후귀속이익 (사후보상 조정)</p>	<p>“어떤 지급금액이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u>사후귀속이익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려면</u> 수입 후 수입물품의 판매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중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는 금액이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상 대비 실제 판매대수 증감량과 목표 대비 실제 영업이익 증감량 사이에 비례적인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쟁점 이전 가격조정액이 순전히 판매대수의 증가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쟁점 이전가격조정액은 판매수량의 증감 외에 인건비 등 영업비용 증감, 가격할인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p>	
7	<p>대법원 2022두 35275 (2022.6.16) 서울고법 2021누34369 (2022.1.14.) 인천지법 2019구합52144 (2021.1.15.)</p> <p><◻♥◁◻※사이언스코리아></p>	<p>사후귀속이익 가격조정약관 (사후보상 조정)</p>	<p>“사후보상조정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후보상조정금액의 실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보상조정금액은 목표 영업이익률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수입물품별로 산정한 개별 수익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고, 사후보상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률 역시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가격 이외에도 판매량과 각 제품별 판매가격에서 수입가격 등의 매출원가를 공제한 마진의 차이, 환율의 등락, 판매관리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원심)</p> <p>“사후보상조정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후보상조정금액의 실</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질적인 발생 원인과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보상조정금액은 목표 영업이익률을 초과한 부분으로서 수입물품별로 산정한 개별 수익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고, 사후보상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률 역시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가격 이외에도 판매량과 각 제품별 판매가격에서 수입가격 등의 매출원가를 공제한 마진의 차이, 환율의 등락, 판매관리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1심)</p>	
8	<p>대법원 2019두 43795 (2019.9.10, 가각.) 서울고법 2018누68621 (2019.5.24.) 서울행정 2017구합78759 (2018.09.20.)</p> <p><한국♣♣♥후레쉬프로듀스㈜></p>	<p>특수관계 제3방법</p>	<p>“델○○홍콩은 원고와 장기간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적정 금액, 국내 도매시장가격, 원고의 시장경쟁력,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가격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델○○홍콩의 위와 같은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반드시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원고와 델○○홍콩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p> <p>“... 이 사건 물품의 거래 및 가격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거래가격 수정 제안이 14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델○○홍콩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거래 가격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p> <p>“...피고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가 동일 항차임을 전제로, 동일한 입항일에 수입된 동일한 물품의 단가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거래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항차라 함은 출항 이후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는 입항일이 아닌 출항일을 의미하는 것... ”</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9	인천지법 2021구합51823 (2022.6.10.) <안○◆>	유사물품 제3방법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신고가격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유사물품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어느 거래의 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정하지 않고 있는 바, ... 피고로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 이에 비하여 유사물품의 총 수입금액을 유사물품의 총 물량으로 나누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할 경우 위와 같은 편향성이나 왜곡 가능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수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가격과 비교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 1-1] 임○○ 대법원 2019두47834 (2019.12.27.) [참조 1-2] 조□□ 대법원 2005두17188 (2007.12.27.)
10	대법원 2019두55781 (2023.8.31.) 서울고법 2018누78307 (2019.9.25.) 서울행정 2017구합78537 (2018.11.29.) < 한국○○(주) >	보세공장 제품과세 (혼용승인)	“관계 법령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세관장의 승인’은 혼용작업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혼용작업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관세법령은 보세구역의 지리적 개념의 ‘외국’과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188조 본문), 이는 보세구역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보세공장 안에서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제조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관세법은 제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에 한하여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부분적 제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관세법 제188조 단서),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내국물품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그것이 과세가격에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p> <p>“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혼용작업사실'과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의 확인'만으로 부분적 제품과세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혼용작업사실과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이 확인되는 이상 부분적 제품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p>	
11	<p>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가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83762 (2021.1.26.)</p> <p><내셔널<◆◇♥●●코리아(유)></p>	<p>합리적 방법 (수탁가공용 부분품)</p>	<p>“... ... 제6-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 단계나 상업적 가치도 동일하지 않은 시추선용 장비 완제품을 판매하는 NOVN의 매출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제6-5방법에 따른 합리적·신축적 적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p> <p>“원고와 NOVN의 특수관계를 배제한 상태를 가정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면 되므로,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과세가격은 'NOVN'이 국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구매자에게 판</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매하였을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해외 생산자가 국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p> <p>“이 사건 물품은 NOVN이 원고에게 '이를 가공·조립하여 국내 조선소에 인도' 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위탁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물품 거래 중 NOVN이 위탁 제조를 위해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무상물품 공급의 실질은 생산지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생산 지원의 경우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생산지원 물품의 구입가격과 운임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무상물품에 관한 과세가격 결정은 이와 균형이 맞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p>	
12	<p>대법원 2022두38007 (2022.6.30. 가각) 서울고법 2019누37198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77480 (2019.1.1.)</p> <p><●○◆■◆마이크로코리아></p>	<p>합리적 방법 (보세공장제품 과세)</p>	<p>“이 사건 공급재료는 한국A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위탁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A가 위탁제조를 위해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입 하여 무상으로 한국A에 제공한 이 사건 공급재료 거래의 실질은 생산지원과 유사하다. 생산지원의 경우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생산지원 물품의 구입가격과 운임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급재료에 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이와 균형이 맞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p> <p>“... 이 사건 물품은 721종의 외국물품과 약 4,983종의 내국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급재료는 위 721종의 외국물품 중 일부이다. 이 사건 공급재료는 한국A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혼용된 후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그 때에 일본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 인도의무도 이행되었다. 일본A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매출총이익율을 그 이전의 단계인 '한국A에 대한 일부 부품 조달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3	대법원 2022두54405(2022.12.15.) 광주고법 2020누12437(2022.07.21.) 광주지법 2019구합13343(2020.09.24.) < (주)☆◇□소재 >	합리적 방법 (실제 거래가 격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	<p>“...결국 이 사건 물품 자체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인덱스의 실제 수입가격 또는 국제거래시세에 기초한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위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p> <p>“원고는 스스로 추출비용을 산정하여 수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출비용 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제출하며 수정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1심)</p>	
14	대법원 2020두36104 (2020.6.25. 기각) 서울고법 2019누45403 (2020.1.29.) 서울행정 2018구합77913 (2019.5.10.) < (주)◆◇♡이텍 >	합리적 방법 (보세공장 제 조 무상수입)	<p>“원고는 이 사건 웨이퍼에 대하여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웨이퍼는 결국 조립공정을 거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이윤이 제외된 제조원가만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이 사건 웨이퍼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1 내지 5방법이 적용될 수 없고, 설계공정 및 생산공정만을 거친 이 사건 웨이퍼 자체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웨이퍼는 원고의 파운드리사업부가 아닌 브랜드사업부에서 생산된 물품이므로 파운드리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그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점, ㉡파운드리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면 설계공정 및 생산공정 중 설계공정에 반영되는 이윤 등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설계→생산→조립공정이 진행될수록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특성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파운드리사업부가 아닌 브랜드사업부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p>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5	대법원 2020두34605 (2020.5.28. 가각) 광주고법 2018누6149 (2020.1.9.) 광주지법 2017구합12209 (2018.10.11.) < (주)□□□에스 >	합리적 방법 (제조원가에 기초한 합리적 방법)	“...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적정한 거래가격 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제조원가를 기 준으로 하였기에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 게 된 것도 아니다. ... 월별로 제조원가가 달 라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평균 제조원가보다 월별 제조 원가가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 및 케이씨씨는 피고에게 월별 제조원 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평균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제출된 연평균 제조원가 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연평균 제조 원가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 진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참조 15-1] 대법원 2014두4115(2 016.5.27.) 판결(한국■ 티스)
16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 ○○○이코리아(주) >	합리적 방법 (보세공장, 제품과세)	“원고는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가공 하는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반도체 IC칩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보 세공장에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는바, 원 고의 수입행위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상 ‘우 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에 대하여 지급한 가격’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5 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탁업체가 제 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위탁업체들이 원고 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 가격을 산출 한 후, 원고의 임가공비용등을 합산함으로 써 이 사건 물품 대가에 가장 근접한 과세가 격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기준으 로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품과세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p><u>방식을 선택한 이상, 웨이퍼의 가격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 전체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 보인다.</u></p> <p>...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이자, 보세 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스스로 수입자가 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왔는데, 이 때 과세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어서 웨이퍼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함이 상당하다.</p> <p>... 원고가 임가공 거래만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웨이퍼의 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웨이퍼 가격이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관세 과세 가격(웨이퍼 가격이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p>	

판례 평석 작성 요령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I,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분	전개번호	크기	구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I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식	12	(1)
본문 내용	12		소속	10	
성명	12		각주	10	1)
요약	12	<요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은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판례 평석 작성 예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두14764 판결 >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라이선서들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원고들은 미국 등 해외영화배급사가 한국에서의 영화의 수입 및 배급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원고들은 해외영화배급사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영화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라이선서(이하 총칭하여 ‘라이선서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라이선서들로부터 그들이 배급권을 가지는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고 라이선서들에게 그 대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 = 영화의 총 매출액 - 배급수수료(총 매출액 중 12%) - 배급비용*

* 배급비용 = 영화의 광고선전비, 수입허가비용, 개봉수수료, 번역 등 제반 비용

이에 따라 원고들은 라이선서들로부터 국내에서 흥행가능성이 있는 영화 등을 선별·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하면서 수입영화 등에 대한 광고선전을 위한 광고 대행사의 선정과 광고선전계약의 체결 및 광고선전비의 지급, 구체적인 광고내용

· 매체 · 시기 · 비용의 결정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라이선서들에게 로열티로서 원고들의 매출액인 관객입장수입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영화필름 대여료에서 12%의 배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 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라이선서들은 광고선전의 시안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광고선전비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며 배급비용에 관하여 예산승인권 행사를 하고 원고들의 장부기장에 대하여 검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광고선전활동에 대하여 통제와 지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0. 6.경 라이선서들로부터 수십건의 영화용 필름(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로서 필름 길이당 부과되는 종량세를 납부하는 한편, 수입부가가치세로서 필름의 수입시에 신고하는 금액[1] 이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수입영화의 국내 상영 종료 후에야 확정되므로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영화의 상영 종료 후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 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라이선서들에게 송금하고 그 로열티의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로열티에서 공제한 광고선전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5. 11.부터 2010. 6. 18.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로열티에 광고선전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광고선전비’라고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3,393,895,735원 및 가산세 958,813,653원 합계 4,352,710,82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결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6항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수입물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들이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 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 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들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및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로열티의 간접적인 지급액(이하 ‘간접지급액’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이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에서 간접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다(관세법 제15조). 관세법상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종량세의 대상이 되므로 관세 목적에서는 과세가격을 파악할 필요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만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지적재산권의 대가, 물품대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수입자나 중개업자의 이윤 등의 요소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관세평가이다.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무역의 저해를 방지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원활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세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거래가격’이라고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여 보충적 관세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에서 규정된 관세평가방법을 실무상 제1 방법 내지 제6 방법[2]으로 칭한다.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제1 방법에 따라 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7%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제1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실제거래가격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거래가격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간접지급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원고들이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의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배급수수료도 증가하지만 그 보다는 라이선서들이 수취하는 로열티의 증가가 더 크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 지출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라이선서들이고 라이선서들이 사실상 이 사건 광고선전비를 원고들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어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시장판매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배급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광고선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매자인 라이선서들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에서 간접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라이선서들이 광고선전비 100을 직접 부담하고, 원고들로부터 로열티 200을 받아 오다가 원고들로 하여금 광고선전비 100을 지출하도록 하면 라이선서들로서는 광고선전비 100을 줄일 수 있어 로열티 100을 받더라도 전체 수익에

는 변화가 없고 그 경우 종전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100만큼 감소하여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회피된다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고, 라이선서들이 원고들로부터 로열티 200을 받아오다가 원고에게 광고선전비 100을 부담하고 로열티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광고선전비 100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의하여 부담한 지출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이다.

2. 관세법상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의 범위

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에 법정가산요소와 법정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실제거래가격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에 더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등 간접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간접지급액에 관하여 대가의 제3자 지급, 하자보증비, 외국훈련비나 외국교육비, 금융비용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간접지급액’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법정가산요소 및 법정공제요소와 구분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그 법정가산요소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제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과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제2호), 생산지원비용, 즉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그 인하차액을 법정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제3호),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제4호), 해당 해당수입물품의 사후귀속이익[4](제5호) 및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관련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그 법정공제요소로서 수입 후에 행해지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제1호),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제2호),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제3호),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 대해서는 예시주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실제거래가격에서 조정되는 법정가산요소와 법정공제요소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간접지급액이나 법정가산요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으나 특정지급액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액이 법정공제요소에 해당한다면 반대로 간접지급액이 되지 않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WTO 관세평가협약의 규정

우리나라는 1994. 12. 30. WTO 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WTO 평가협약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위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헌법 제6조 제1항).[5] WTO 평가협약은 일반서설(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24개의 본문조항(article), 3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속서 중 부속서 1은 주해(interpretative notes)이다.[6] 위 협약 제14조는 부속서 1 주해(Interpretative Notes) 및 부속서 2, 3도 WTO 관세평가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속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WTO 관세평가협약은 간접지급액을 ‘실제거래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수입물품을 이전 받는 데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나 기타의 지급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4항). ‘당해 수입물품’과의 관련 요건은 경우에 따라 특정지급액이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은 간접지급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WTO 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 판매조건 내지 거래조건은 대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판매조건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7].

둘째, 적극적 요건으로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1항). 실제거래가격

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WTO 평가협약 제1조의 주해 제1항). 다만,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제외 된다. 즉, 소극적 요건으로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WTO 평가협약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8] 이외에 구매자 자신이 부담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비용이 구매자에 의해 발생되고 또한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활동은 구매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9].

위 요건에 관하여,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에 규정된 가산요소는 간접지급으로 간주하되, 협약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지급금액도 간접지급액이 아니라는 견해[10]도 있지만 WTO 관세평가협약이 실제지급가격에 관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지급금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간접지급액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을 제외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행위가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수입 이후 발생한 활동이라도 동일하다(WCO 예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 또한 수입물품 구매 이후 실제 수입 이전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광고선전비는 비록 그것이 판매자의 이익이 되더라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WCO 예해 16.1 물품구입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다만,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WTO 평가협약 제8조의 조정사항은 당연히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2항).

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유형

(1) 상계지급과 판매자의 채무변제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하

거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상계지급액과 제3자 채무변제액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수입물품의 대가를 할인받은 경우에도 그 할인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이 같으므로 그 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자동차의 전시, 판매망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자동차에 대한 보증·유지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하되, 이 방식은 외국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어 위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 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를 할인가격에 수입한 사안에서 외국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원고가 외국회사에게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할인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반면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외국회사들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통상 판매가격보다 일정 비율만큼 할인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할인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원고와 외국회사들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은 할인가격이 통상의 가격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외국회사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은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2495 판결).

(2) 하자보증비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면서 별도로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구매자가 하자보증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하

자보증비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하기로 정하고 하자보증비만큼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할인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로부터 네트워크통신기기를 수입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본래의 시스템 성능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의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외국회사가 하고 원고가 그 유지비용 명목으로 그 대가를 외국회사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수입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3) 외국훈련비와 외국교육비 및 금융비용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구매자에게 훈련비 또는 교육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호). 이는 수입물품의 대가는 아니지만 거래조건으로 훈련 또는 교육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반면에 그 훈련 등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간접지급액이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

호).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조건으로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거래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3.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과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가.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

(1) 관세법과 WTO 평가협약상의 판단기준

간접지급액에 관한 관세법령과 WTO 평가협약의 규정을 정리하면 간접지급액의 해당여부는 ① 특정지급액이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와 ② 그 지급액이 구매자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전자는 거래조건 기준, 후자는 자기계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자의 특정지급액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면 이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단순히 판매자와 합의나 양해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액이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행해지는 지급액은 명시적인 거래약정에 의한 경우와 묵시적인 약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급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약정과 관련이 있어야 그 거래의 간접지급액이 된다. 그러한 관련이 없다면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액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간접지급액이 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4항).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면 간접지급액이 되므로 이를 적극적 기준, 자기계산 기준에 해당하면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므로 소극적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거래조건 기준

명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간접지급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1] 판매자가 요청하고 구매자가 승낙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묵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통상 구매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요청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추정된다. 구매자의 채무변제는 특정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어야 간접지급액이 된다. 그 밖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제2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제3호), 그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제4호)이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간접지급액이다. 지급금액의 거래조건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약정될 수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3) 자기계산 기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지급액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이다. 자기계산 기준에 의하여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판매 활동 비용이다.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구매자가 그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간접지급액이 아니다(WTO 평가협약 제1조 주해 제1단락 (b), 2), 구매자가 기계를 구입한 후에 그 기계가 판매계약의 조건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적 전 시험 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비용도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WCO 예해 16.1 제3항).

일반적으로 특정지급액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기준을 충족하면 이는 자신의 약정상의 의무이행으로서 통상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액이 되므로 자기계산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명시적 거래약정이 있다면 간접지급액의 판단은 용이할 것이나 묵시적 거래약정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기계산 기준이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특정지급액에 관하여 명시적 거래약정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계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그 지급액에 관하여 묵시적 거래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관세법상 간접지급액 해당

(1) 제1설

제1설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는 견해로서 피고의 주장이다. 영화의 판권은 라이선서들에게 귀속되고, 판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고선전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은 라이선서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한 것인 점, 실제로 라이선서들은 광고선전의 시안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원고들은 이를 단순히 복사하여 국내 매체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며, 광고선전활동을 통해 매출이 증가될 경우 라이선서들의 로열티 이익 증가분이 원고들의 배급수수료 증가분보다 크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은 라이선서들이 배급비용에 관해 예산승인권이 있으며, 원고들에게 장부 기장을 요구하고 이를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원고들의 광고선전활동은 라이선서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투자주간사가 영화의 수익과 비용의 주체이며 원고들과 같은 배급대행사는 배급수수료만을 수취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본래 역할이 광고선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라이선서들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광고선전비를 영화제작사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요컨대, 제1설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인 묵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고 소극적 요건인 자기계산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제2설

제2설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 원고들의 주장이다.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그 성격상 판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효과적인 광고활동의 수행은 원고들 및 라이선서들 모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원고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업활동으로서 광고선전 등의 국내배급활동을 한 것인 점, 원고들은 직접 라이선서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중 국내에서 흥행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선별하며, 흥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광고선전비 지출규모를 정하고, 라이선서들은 경영관리 목적에서 광고선전비를 총액 기준으로 승인할 뿐, 개별 지출규모에 대한 원고 판단을 존중하였던 점, 원고들은 광고선전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계약상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광고시안을 제작 기초자료를 가진 라이선서들이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점, 원고들은 해외 제작영화를 국내에 배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제작 영화 기준으로는 판권 소유 투자회사에 해당하며, 실제로 상영관으로부터의 매출액 전액을 수입금액으

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 산정방식은 전 세계 영화 산업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요컨대, 제2설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부담은 원고와 라이선서들 사이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자기계산에 따른 지출이라는 것이다.

(3) 대상판결의 입장

대상판결은 관세법과 WTO 평가협약상의 관련 규정을 판단의 전제로서 언급한 다음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활동은 시장판매에 관한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들이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들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제2설의 입장을 택하였다. 대상판결이 언급한 광고선전의 시장 판매 관련성, 구매자의 수익증대 관련성 부분은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기준인 자기계산 기준과,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 부분은 거래조건 기준과 각 관련이 있는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광고선전활동은 정상적인 시장판매활동이고,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판매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자기계산 기준과 거래조건 기준에 따라 간접지급액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상판결은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과 비교된다. 위 대법원 판례는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자가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자동차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 판매 이후 애프터서비스 등을 구매자가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구매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하는 대신 통상적인 방식인 딜러 방식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사안에서, ‘구매자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가치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5%의 할인액이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약정된 자동차 판매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지출은 거래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며 그러한 지출이

거래계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접지급액의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에 따르면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상판결 사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구매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사정이 없고 원고들의 광고선전비의 부담이 해외영화의 국내 배급사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익에도 기여함으로써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는 구별된다.

4.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로열티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는지를 내국세법 인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간접지급액'을 예시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반면 WTO 관세평가협약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① 특정지급액이 시장판매와 관련되는 활동인지 여부, 구매자의 수익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② 광고선전활동을 실제 누가 수행하는지,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는 누구에 부담하는지 등을 간접지급액의 판단을 위한 자기계산 기준과 거래조건 기준의 구체적 요소로 제시하였는바, 명시적인 거래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지급액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광고선전의 시장 판매 관련성, 구매자의 수익증대 관련성 부분 및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판시로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추후 다른 유사 사안에서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판단기준인 거래조건 기준과 소극적 판단기준인 자기계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시가 있기를 기대한다.

[각주]

- [1] 통상 수입시 필름당 100만원 내외를 신고한다.
- [2] 제1 방법은 해당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2 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3 방법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4 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5 방법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6 방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다. 관세평가방법은 제1 방법부터 제6 방법까지 순차로 적용된다(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 [3]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6, 228면.
- [4]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등 참조.
- [6] 관세평가제도의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WTO에 관세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결정(decision)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관세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의견(advisory opinions), 예해(commentary), 해설(explanatory note), 사례연구(case study) 및 연구(study)라는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 [7] 성원제, “관세법상 간접지급에 대한 관세평가”, 재판자료 제125집, 2013, 214면.
- [8]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가산요소와 같다.
- [9]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116면.
- [10] 김기인, 상계서, 114면.
- [11]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은 간접지급액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가에 대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다만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직접 지급액으로도 볼 수 있다.